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6

발의연월일: 2020. 7. 23.

발 의 자:김경협·서영석·전혜숙

황운하 · 김민석 · 김정호

김경만 • 박재호 • 김두관

윤미향 • 윤재갑 • 김승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 라 함) 제도를 신설함.

이에 따라 사업자는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하반기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5%(2019년도 소득분의 경우에는 0.25%)를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그러나, 이 제도가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건수가 1만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음. 이로 인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전가하 거나 퇴직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안정을 위한 시 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에 협조하는 행위이고, 사업자 본인의 체납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 행위 미협조를 이유로 본인 체납의 경우와 같이 0.5%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면제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담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가산세율을 0.2%로 하향하여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81조의11).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5"를 "2"로, "1만분의 25로"를 "1천분의 1로"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제2호나목 본문 중 "5"를 "2"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본문에 따라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종전의 제81조의11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
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	성실 가산세) ①
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	
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	
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	
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	
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	
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	
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	
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u>.</u>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	1
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 가. (생략)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 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 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 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 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 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생략)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

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

의 1천분의 5. 다만, 2019

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가. (현행과 같음) -----<u>1천</u>분의 1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가. (현행과 같음) ----<u>2</u>. -----

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 <u>로 한다</u>.

② (생략)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 -----가산세를 부과하지 <u>아니한다</u>.

② (현행과 같음)